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전파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에 선박교통관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선박의 무선설비)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이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VHF)를 말하며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 자격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면허 및 경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선박승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정보통신·무선설비 산업기사(또는 기사·기술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제6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현장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수료한 선박교통관제사

2. 다른 선박교통관제관서로 전입한 선박교통관제사

3.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③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선박교통관제사 중 선박교통관제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2. 제2항에 따른 현장직무교육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직무교육은 현장직무교육 강사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2. 제5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⑤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수료한 교육 수료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3.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과 실습내용에 대한 시험과 교육태도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평가를 통과하려면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과정의 내용, 평가,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 · 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인적사항 · 자격, 교육강사 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

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적발 및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최초 접수 시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사고 발생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자료 입력 지원업무. 다만, 해당 업무를 위해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으로부터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부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절차)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다만, 사고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중 다른 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

1. 1단계: 관찰확인
2. 2단계: 정보제공

3. 3단계: 조언·권고

4. 4단계: 지시

제10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교통상황 및 설치지역 환경,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

가·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 관련)

	채널번호 (CH)	통신주파수(MHz)	통신방식
1	06	156.300	단신
2	08	156.400	단신
3	09	156.450	단신
4	10	156.500	단신
5	11	156.550	단신
6	12	156.600	단신
7	13	156.650	단신
8	14	156.700	단신
9	15	156.750	단신
10	16	156.800	단신
11	17	156.850	단신
12	20	(수신)157.000 (송신)161.600	복신
13	22	(수신)157.100 (송신)161.700	복신
14	67	156.375	단신
15	68	156.425	단신
16	69	156.475	단신
17	70	156.525	단신
18	71	156.575	단신
19	72	156.625	단신
20	73	156.675	단신
21	74	156.725	단신
22	75	156.775	단신
23	76	156.825	단신
24	77	156.875	단신
25	87	156.375	단신
26	88	157.424	단신

* 채널번호 15, 17번은 해양방제업무용으로 사용

* 채널번호 70번은 조난, 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7조 관련)

1. 기관의 준비사항

책 임 및 권 한	교육에 관계된 과제를 수행하고 확인하는 인원에 권한과 책임은 정의 및 문서화 되어 있는가?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교육관리시스템(TMS) 관련 임의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나. 교육관리시스템(TMS)과 관련된 문제점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다. 초기 조치와 권한요청 혹은 해결책 제공은 지정된 채널을 통하는가? 라. 해결방안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가? 마. 교육생 교육과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가 적절한가? 바. VTS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변화를 포함하는 초기 조치가 있는가?
관 리 대 표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되었는지 여부: 가. 교육관리시스템(TMS)의 수립, 이행과 관리 나. 교육관리시스템(TMS)의 수행에 관한 보고

2. 교육관리시스템(TMS) 내부 심사

교육관리시스템(TMS)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내부 심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교육관리시스템(TMS) 심사는 적어도 매년 실시하는가?
내부 심사의 기록은 유지관리 되는가?

3. 교정 및 예방 조치

교육관리시스템(TMS) 결함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
잠재적인 결함의 탐지와 제거를 위한 품질기록과 고객 불편사항들, 심사 보고서 및 불일치 보고서 같은 정보 자원에 대한 검토가 있는가?
교육 진행 절차 또는 교육 계획 중에 결함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경향에 관한 교육생 학습의 결함의 분석은 하고 있는가?
결정된 결함의 원인 및 결함의 제거를 위한 수정 작업이 이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활동의 교육관리시스템(TMS) 기록은 유지 되는가?

4. 관리 검토

관리검토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가?
관리검토 기록은 유지되는가?

5. 교육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교육 관리 매뉴얼	IALA 권고서 V-103 요구사항에 적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정확히 제공되는 교육관리시스템(TMS)은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되었는가?
	교육관리시스템(TMS)은 교육 관리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는가?
	매뉴얼의 아래 사항의 포함 여부: 가. 품질정책 사본 나. 교육관리시스템(TMS) 개요 다. 교육관리시스템(TMS) 문서 구조의 개요 라. 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참조 마. 적절한 관련 교육관리시스템(TMS) 문서의 참고사항
교육 관리 시스템 절차	절차는 IALA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품질 정책과 일치하여 문서화 되었는가?
	교육관리시스템(TMS) 및 문서화된 절차는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가?
	교육관리시스템(TMS) 절차 제공된 상세 단계는 각 단계별로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교육 및 지원기능의 복잡성 나. 강사와 지원 직원에 관한 기술

6. 문서 및 자료관리

문 서 관 리	IALA V-103 및 책임당국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 관리를 위한 절차가 문서로 존재하는가?
문	교육관리 문서는 타당성이 검토되고 승인되었는가?

서 자 료 승 인 및 발 급	아래와 같이 절차의 보장 여부: 가. 검토과정은 적절한 참고자료와 배경정보를 함께 규정되었는가? 나. 교육관리 시스템 문서의 개정상태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다. 교육관리 시스템이 행해지는 모든 곳에서 교육관리 시스템 문서가 이용 가능한가?
자 료 저 장	저장된 교육자료 파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가?

7. 자원

문 서	교육활동의 관리, 지원, 실행 확인을 위해 자격있고 훈련된 직원이 존재하는가?
자 료 관 리	교육관리시스템(TMS) 지원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장비와 자료가 존재하는가?
기 관	관리, 훈련, 평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의 훈련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직 원 의 교 육	교육생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직원은 적절한 강사 교육 요구사항을 만족스럽게 갖추었는가?

8. 구매

구 매	IALA 권고사항과 책임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수 서비스, 시설, 장비, 교육지원 장비를 갖추는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	--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 보조강사가 적절하게 훈련되었는가? 나. 적용 가능한 교육 계획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교육생 교육 외부시설의 활용 다. 교육계획 적용에 적합한 장비의 구매 라. 교육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공하는 하부 교육기관은 교육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하 부 교 육 기 간 의 평 가	하부 교육기간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제공된 교육에 관한 서비스, 시설, 장비 또는 자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 평가의 방법 및 적용된 기준이 존재하는가?
교 육 과 정 개 발	교육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 관리하고 확인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교육 과정 개발 절차는 다음을 확보해야 함: 가. 교육 과정 개발 및 검토 활동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맡겨져 있는가? 나. 적절한 모델코스 및 권한을 위한 요구사항이 고려되었는가? 다. 교육과정의 목표가 계획된 자격조건에 따라 정의되어 지는가? 라. 교육생의 지식과 능력 요구사항이 고려되어 졌는가? 마. 적절한 시뮬레이터 사용이 고려되어 졌는가? 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직원에게 적절한 참고문서를 사용가능토록 하였는가? 사. 교육과정 문서내 모호함은 해결되었는가? 아. 교육과정 문서의 검토는 관리되고 있는가?

	교육과정 개발의 기록은 유지되는가?
교육 계 획	각 과정별 교육 계획이 정의되고 문서화 되었는가?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가. 교육과정의 상세 나. 교육생 자격조건의 필수요건 다. 요구되는 자원의 확인 라. 강사/평가자의 자격 요구사항 마. 강사와 교육생의 비율 바. 과정 자료 참고, 적용 가능한 교육관리 시스템 절차 및 문서화 사. 과정의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지침 아. IALA 권고서 V103에 언급된 교육생 능력, 지식, 이해, 숙달 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기준

10. 교육 지원 절차

교육의 전달 지원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관리감독 상황 아래 교육지원 절차가 확인되고, 계획되고, 실행되는가?
관리 감독 상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결석이 교육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 나. 적합한 장비와 시설의 사용 및 이용 가능함 다.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라. 문서화된 안전절차의 준수

11. 적용 검토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함: 가. 지원자의 자격조건의 확인 나. 적절한 교육과정을 위해 필수요건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자에 언급된 자격조건의 평가 다. 지원자에 의해 확인된 자격조건의 제공을 위해 교육과정의 적절성 검토 라. 교육생 자격조건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된 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성에 관한 지원자와 의사소통
적용 검토 기록이 유지되는가?

12. 교육생 능력 확인

적 성 · 평 가 시 험	선박교통관제 기본교육을 위해 적합성을 위한 지원자들의 검증을 준비하는 절차가 있는가?
검 증	적용 가능한 교육 계획의 세부적인 필수조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가?
승 인	교육 이전 발견된 필수요건 요구사항의 적절한 증거 및 확인된 지원자의 식별이 가능한가?
평 가	교육과정의 성공적 수료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기 전에 모든 지식과 능력요구사항이 교육생 지원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장하는가?
및	능력 테스트 및 평가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가?
능 력	교육생 지식 또는 정의된 숙련도를 평가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가?
수 료	교육생 지식과 능력의 평가 기록이 책임당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유지되는가?
교 육 생 절 차	교육 수료 적용을 위해 교육생 과정 기록 및 식별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가?

13. 자격 증명 및 배서

필요시 교육생의 성공적인 수료를 VTS 책임당국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존재하는가?
VTS 교육과정 증서 발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14. 교육생 수료 결함 관리

검 토 적 용	교육생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가?
	적절하다면, 교육생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부족함이 기록된 특정지역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가?
	나. 실패 그리고 훈련과정의 반복이 요구되는가? 다. 교육 중단이 권고되어 지는가?

15. 교육관리 시스템 기록의 관리

책임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관리 시스템 기록의 확인, 수집, 분류, 평가, 정리, 저장, 유지, 폐기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아래를 증명하기 위한 교육관리 시스템 기록의 유지: 가. 교육생 교육수료의 만족도와 숙달 요구사항 나. 교육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기능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 교육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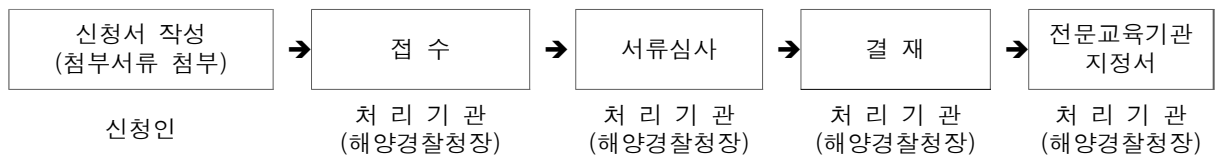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현황 다. 교육강사의 인적사항·자격, 교육강사 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라.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마. 연간 교육계획 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사.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전화번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지정 조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